한국에너지공단

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

에너지 바우처

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2023년
2월 28일까지
신청하세요

신청장소

주민등록상 거주지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[illegible]

신청기간
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

신청대상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"생계, 의료" 및 "주거, 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·희귀중증 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이 있는 세대

바우처 금액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여름	29,600원	44,200원	65,500원	91,500원
겨울	124,100원	167,400원	222,700원	291,800원
총 금액	153,700원	211,600원	288,200원	383,300원

[illegible]

사용안내

구분	사용기간	사용방법
여름 바우처	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	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	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	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택) 실물카드 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
[illegible]

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☎1600-3190
홈페이지 www.energyv.or.kr

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

에너지바우처는 무엇인가요?

에너지 취약계층이 **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**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
바우처 금액

구분	1인 세대	2인 세대	3인 세대	4인 이상 세대
여름	29,600원	44,200원	65,500원	93,500원
겨울	124,100원	167,400원	222,700원	291,800원
총 금액	153,700원	211,600원	288,200원	385,300원

- 위 금액은 2022년도 **총 지원금액**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
- 2022년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인상
-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(최대 45천원,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)
-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

신청대상

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

구분	내용
소득기준	**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** **"생계, 의료" 및 "주거, 교육('22년 한시)" 급여 수급자**
세대원 특성기준	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**노 인:** 주민등록기준 1957. 12. 31 이전 **출생자** **영유아:** 주민등록기준 2016. 01. 01 이후 **출생자** **장애인:**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**임산부:**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**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**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중증질환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[별표3], 희귀질환[별표4], 중증난치질환[별표4의 2]을 가진 사람 **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**

• 지원제외대상
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-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
  (단,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)

• 다음의 경우,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
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('22년 10월~)를 지원 받은 수급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'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(세대)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(세대)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장소

- **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**
  - **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, 가족, 친족** 신청 가능
  - '21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(주소, 세대원 등)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
- **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**

신청기간
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

※신청 후 정보변경은 다음 기간 중 가능합니다.

신청 후, 변경 가능한 정보	기간
세대원 수, 여름 당겨쓰기	2022년 5월 25일 ~ 2022년 6월 28일
이용권 [요금차감↔국민행복카드],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사, 대상자, 연락처	2022년 5월 25일 ~ 2023년 4월 30일

신청시 읍·면·동에서 확인 하세요!

2021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대상자		
정보변경 없음	**자동 신청** **신청 필요x**	- 단, 세대원 수 변경이나 여름 당겨쓰기를 원할 경우 2022년 6월 28일까지 재신청 필요
정보변경 있음	**신규 신청** **신청 필요o**	정보변경 예시 - '21년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사용자의 이사 - '21년 대비 '22년 세대원 수 변동 - '21년 대상자 사망(2인 이상 세대) 등
2022년도 신규대상자 : **신규 신청**		

전입신고 할 때 에너지바우처도 꼭 재신청하세요!

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를 하신 경우,
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 거주지 정보로
에너지바우처도 꼭 **재신청**해야 **사용**이 **가능**합니다.

어떻게 사용하나요?

사용기간

구분	사용기간	사용방법
여름 바우처	2022년 7월 1일 ~ 2022년 9월 30일	• 요금차감(전기)
겨울 바우처	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	• 요금차감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) • 국민행복카드 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
※요금차감은 '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(작성)된 경우에 한해 지원

※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

요금차감

여름 전기 / 겨울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1개

- **해당자:**
  아파트 거주자, 거동이 불편한 사람,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
- **신청 및 사용:**
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·면·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**자동차감** (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)

국민행복카드

겨울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

- **해당자:** 등유, LPG,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,
 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
- **신청 및 사용:**
  읍·면·동에 신청 후,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 직접 구입
  - 등유, LPG, 연탄 :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
  - 전기, 도시가스 :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
- **유의사항**
  -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
  -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
  - 주택용 LPG·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(차량용 LPG, 휘발유, 경유 등) 구입 불가